

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8월 29일

나. 제출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9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9월 7일

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
2023년 10월 18일

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불링장 관외요금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타지역 주민과의 이용요금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불링대회 대관 시 전용사용료의 감면율을 명확화하여 불링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체육시설 이용료 중 불링장 관외이용료 신설(안 별표3)
-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 수정 및 변경(안 별표7)
- 해당단체 주관하는 불링행사 시 사용료 감면 요율 신설(안 별표7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3항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구조문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불링장 관외요금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타지역 주민과의 이용요금 차등화를 통해 구미시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각종 불링대회 대관 시 전용사용료의 감면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,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미시민이 편리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내용 및 증명서류를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